

인천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9나31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9나314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6. 17 선고 2018가소5787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6. 17. 선고 2018가소57878 판결

변론종결 2020. 4. 21.

판결선고 2020. 5.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7. 12. 8.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7. 25. 사직하기까지 인천 남동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의 전기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전기검침 등 업무도 원고의 고유 업무권한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아닌 기전실 직원 2명에게만 전기검침 업무를 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매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받는 전기검침수당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한 반면, 전기검침수당의 귀속주체가 되어야 하는 원고에게는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는 위 전기검침수당을 부당이득하였거나, 위와 같이 전기검침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한 전기검침수당을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위자료)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 1) 일반적으로 전기검침수당은 한국전력이 전력수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호별 검침, 요금 청구 및 수금 업무 등을 위임하고 이를 위임받은 자에게 그 검침 및 수금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성질의 돈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기검침수당의 귀속주체는 결국 한국전력과 전력공급계약, 전력사용계약 내지 전기검침대행계약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위와 같은 전기검침 업무 등을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 2) 갑 제23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5. 30. 한국전력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요금의 적용을 종합계약

방식으로 정하고, 호별 검침, 요금의 청구, 수금 등의 절차 및 그 업무의 위임, 수당(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① 한국전력이 매월 정기검침일에 종합전력량계를 검침하여 피고에게 통보하고, ② 피고는 호별 전력량계를 검침한 후 호별 사용전력량과 계기기침 및 변동된 세대명의를 사용량 검침표에 기재한 다음 대표자가 날인하여 정기검침일의 다음날까지 한국전력에 제출하여야 하며, ③ 한국전력은 종합계약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전기요금 및 TV 수신료 등이 명기된 요금청구서 및 영수증 1매로 피고에게 일괄 청구하되, 각 호별 전기요금 및 TV 수신료 등의 내역서를 피고에게 교부하고, ④ 피고가 전기요금 및 TV 수신료 등 청구된 금액을 전액납부할 경우 한국전력은 피고가 호별 사용전력량 검침, 호별 전기요금, TV 수신료 등의 청구 및 수금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피고의 대표에게 1호당 한국전력의 요금업무처리지침에 정한 전기업무 지원금 및 TV업무 지원금을 지급하되, 검침착오 발생 건에 대하여는 전기업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아파트 종합계약(이하 '이 사건 종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사건 종합계약 제9조 제2항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계약의 폐지 또는 변경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위 계약은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종합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으로 갱신되어 온 것으로 추인된다), 피고는 원고가 위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당시 한국전력으로부터 매월 272,920원의 전기검침수당을 받아 이 중 합계 80,000원을 직접 전기검침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한국전력으로부터 호별 사용전력량 검침, 호별 전기요금, TV 수신료 등의 청구 및 수금업무를 위임받고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자는 직접 노무를 제공한 기전실 직원들이나 전기검침 등 업무도 본인의 고유 업무권한이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아니라 한국전력과 이 사건 종합계약을 체결한 피고이고, 한국전력이 피고에게 지급한 전기업무 지원금 및 TV업무 지원금은 호별 전기검침뿐만 아니라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등의 수금까지 일련의 절차를 전부 대행한 것에 대한 대가이며, 피고는 위 위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기전실 직원들로 하여금 전기검침 등 업무를 집행하게 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한국전력과 사이에 전력공급에 관한 계약 기타

위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전기검침수당이 원고에게 귀속됨에도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소영 판사 임진수 판사 신정수